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3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 지연으로 주민불편 발생 및 택지 개발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착수시기 등 절차를 마련 (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2024.1.10.)」)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시기 등 절차 신설(제22조제3항 및 제4항)

- 1)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지구를 지정·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, 현장조사 착수 전에 미리 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공공택지기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5동)
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
(전화 044-201-4515, 4521, 팩스 : 044-201-5659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「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4515, 45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